제31호

Vol.31 2023.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의정브리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지방의정연구센터장 **고경훈**

•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배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지방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연차적 도입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배치 및 복무 형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와 사무처(국/과) 중 의회별 여건에 따라 배치 형태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배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제38조 제5항은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라고 규정함

1 위원회형

• (배치)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형태

• (복무)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사무처장이 관리

■ 장점

- 정책지원관의 상임위별 전문성 강화에 유리
- 의원 가까이에서 근무함으로써 의원의 관심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의원과의 친밀감이 증대, 시의적절하고 현실감 있는 지원을 통하여 의원과의 소통 강화

■ 단점

- 전문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의 전문위원실 일상 업무로 인하여 정책개발 중심의 정책지원 업무를 위한 시간, 작업 환경 등 여건이 어려울 수 있음. 정책지원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심도 있는 정책발굴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지방의회 각 위원회에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기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 업무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입법지원 차원에서 조례 성안 업무를 하고, 또 다른 부서원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게 된다면, 조례안 성안과 검토 보고를 모두 전문위원이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업무 체계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지방의회는 통상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구분해 (院)구성을 하게 되고, 전반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 시 해당 의원의 소속 위원회가 변경될 때에는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보 또는 인사이동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보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의원과의 유대감 강화로 인해 의원의 의정활동 외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도 있음

2 사무처형

- (배치) 사무기구 내 별도 부서, 팀에 배치하여 관리

① 별도 관리 조직 없이 기존 조직 내에서 관리

- 기존 부서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정책지원관 배치, 관리
-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미만인 시·군·구의회 등 소규모 지방의회 및 위원회가 없는 지방의회에 적합

② 정책지원관의 복무관리를 위한 별도 담당관 또는 과신설

- 정책지원관이 20명 이상 대규모 의회로, 기존 조직으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적합

③ 정책지원관의 복무 관리를 위한 팀 신설

- 일반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이상인 시·군·구의회 등 중간규모의 의회에 적합
- 시도의회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등 기존 부서 내에 팀을 신설, 시·군·구의회의 경우 사무국·과장 직속으로 신설 가능

- (복무)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 장점

- 정책지원관의 복무관리 통제가 가능하고 의원 개인의 보좌관화 방지 유리
- 정책연구 차원에서 집중력이 강화되고, 자율적·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가능
- 전문위원실 소관의 일상 업무로 인한 시간 및 주변 여건 악화 없이 정책지원 업무에 대한 집중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단점

- 정당이 서로 다른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할 경우 정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갈등과 혼란 발생 우려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의 지휘·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 일반업무와 관련해서는 의회 사무기구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지휘·명령체계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혼선 우려
- 사무기구 배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과는 다른 차원의 지휘·명령체계 구축 필요, 성과 평가를 위해서도 의원 및 사무기구의 장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령 또는 조례상 명확한 근거 필요
- 의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업무 요청을 할 경우 의원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고, 의원 관심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밀착 지원에 애로

3 종합

- 정책지원관의 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의 배속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별 의회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하되, 정책지원관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원 취지를 반영하고 의원의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위원회보다는 의회 사무기구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지방의회의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칙에 따라 내년에 우선 채용하게 될 정책지원관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 조직을 재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용문의 고경훈(지방의정연구센터장, kukkh@krila.re.kr)

 COPYRIGHT(C) BY KRILA. ALL RIGHTS RESERVED